



-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2. 11.



강 한 곤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강한곤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봉사단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에서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교통안전교육 시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용어정비를 통해 용어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년 11월 4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한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922052
------------	----------

발의일자: 2022. 11. 4.

발의자: 강한곤, 정순옥, 황국주,  
이선주, 김장관

## 1. 개정이유

-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봉사단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정의 규정을 신설(안 제2조)
- 나.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
- 다. 교통안전교육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명시(안 제7조)
- 라. 기타 용어 정비(안 제9조,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1)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 2) 「교통안전법」 제3조
  -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주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봉사단체”를 각각 “교통안전 봉사단체”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계기관”을 “유관기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u>&lt;신 설&gt;</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u>교통안전 봉사단체</u> ”란 모범운 <u>전자회</u> , <u>녹색어머니회</u> 등 주민의 <u>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u> <u>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u> <u>체를 말한다.</u>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 략) <u>&lt;신 설&gt;</u>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7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교통안전교육) ① ----- ----- -----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교통지도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	제9조(교통지도 등) ① ----- -----

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 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 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 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예방 등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  
----- ----- 교통  
안전 봉사단체 -----  
-----  
-.  
② -----  
-----  
----- ----- 교통안전 봉사단체  
-----  
-----  
-----  
-----.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유관기관-----  
-----  
-----  
-----  
-----  
-----.

#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 · 아동 · 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 · 교육 · 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차량 운전자 등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달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등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주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통지도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

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예방 등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